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3월 22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19조)

## 3.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 제34조제2항, 제45조, 제47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2. 12. 8.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다. 주요 내용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19조)

-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를 “「도서관법」 제29조” 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27조” 를 “「도서관법」 제29조” 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를 “「도서관법」 제45조” 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9조” 를 “「도서관법」 제47조” 로 한다.
- 제19조제1항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으로 한다.

라. 검토 의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